

##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③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충족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 ※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2018. 12. 11. 이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선정방법	① 우선공급(7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② 일반공급(3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미 선정 시 일반공급(30%)에 포함
경쟁 시 우선순위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 ※ 재혼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출산, 입양 자녀의 경우만 해당 ② 2순위 : 무자녀 / 2018.12.11. 이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한 자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유의사항	※ 임신과 입양의 경우, '임신진단서' 등과 같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 02. 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030,161원 ~ 7,236,192원	7,094,206원 ~ 8,513,046원	7,094,206원 ~ 8,513,046원	7,393,648원 ~ 8,872,376원	7,778,024원 ~ 9,333,628원	8,162,400원 ~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030,161원 ~ 8,442,224원	7,094,206원 ~ 9,931,887원	7,094,206원 ~ 9,931,887원	7,393,648원 ~ 10,351,106원	7,778,024원 ~ 10,889,232원	8,162,400원 ~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236,193원 ~ 9,648,256원	8,513,047원 ~ 11,350,728원	8,513,047원 ~ 11,350,728원	8,872,377원 ~ 11,829,835원	9,333,629원 ~ 12,444,837원	9,794,880원 ~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 ~ 160% 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선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근로소득자용) ※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 전년도 각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이라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각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되지 않을 경우 →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개인정보 삭제)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상기 서류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일반과제자, 간이과제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료 소득금액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자영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 원본(신고자료)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간이과제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간이과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택공공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상기 서류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② 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 비사업자 확인각서(2020. 01. 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기본주택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서류[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 10. 28. 이후 발행분]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정보취약계층만 해당) ※ 인터넷 청약(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건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 안내(신청자용)	
	○		주민등록표등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단, 1961. 01. 01 이전 출생자는 1961. 01. 01 ~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반드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청약통장사수 확인서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복부 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소득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소득산정대상의 소득금액 등 소득자격요건 확인서(건본주택 비치)	
	○		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한 경우 출산 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 관련 일자 확인 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 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일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일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동반 체류 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10. 28.)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대리인 제출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 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출서류(신청자 구비서류)는 최초모집공고일(2021년 10월 28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